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1.>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7. 12. 19.]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 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2. 2. 15.>

[본조신설 2018. 2. 13.]

[제목개정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5항 및 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2022.2.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100분의 70 이상 (2021년 까지)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